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22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진중오 · 박정하 · 고동진
김소희 · 엄태영 · 안철수
김상훈 · 서천호 · 김용태
조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

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5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및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 및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제5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되,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u> <u>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 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 <u>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 성화에 관한 사항</u> <u>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 항</u> <u>4.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5.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및 학 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 항</u> <u>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 및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u>② (생 략)</u>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 ④ (생 략)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
영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모든 학생이 1
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
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되,
교육부령으로-----

-----.